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인도할 연고자 등의 기준 및 집행방법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변경 청구”를 “변경·취소·연장 청구”로, “변경·취소·종료”를 “변경·취소·종료 청구,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변경·취소·연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호시설”을 “보호시설, 연고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에게”를 “장(다만,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 등은 제외한다)에게”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 제2항 및 제9항의 연고자 등이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연고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의3(연고자 등에게 인도시 집행절차)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

에게 인도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등과 연고자 등의 관계, 피해아동등에 대한 보호·양육 이력, 아동학대행위자와 연고자 등의 관계, 범죄 전력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사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관한 사항, 이 영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동의서 제출 및 이 영 제5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기 전 연고자 등에게 별표 1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기 전 연고자 등에게 별표 1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고자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연고자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고자 등에게 별표1의 범죄경력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피해아동등을 그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등 필요한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연고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 등은 응급조치 기간 동안 이 영 제5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방문 및 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피해아동등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4호(종전의 제23호) 중 “제22호”를 “제23호”로 한다.

6의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관할 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23. 제5조의3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시 집행절차에 관한 사무
제8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 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5조의3 관련)

구분	대상 범죄
1. 생명, 신체에 대한 죄	가.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부터 제259조의 죄, 제261조, 제262조, 제264조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 제273조부터 제275조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부터 제281조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 제294조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부터 제341조의 죄, 제342조의 죄(제333조의 죄부터 제341조의 죄의 미수범에 한한다)
2. 성범죄	가.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 제305조부터 제305조의3의 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
3. 가정폭력 관련 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
4. 아동학대 관련 범죄	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죄 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죄
5.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u>변경</u> 청구,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u>변경 · 취소 · 종료</u> 청구 또는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 ----- ----- ----- <u>변경 · 취소 · 연장</u> <u>청구</u> ----- ----- ----- <u>변경 · 취소 · 종료</u> 청구, 법 제47조에 따른 <u>피해아동보호명령의</u> 청구, 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u>피해아동보호명령의 변경 · 취소 · 연장</u> ----- ----- -----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	제5조(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① ----- ----- -----

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
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
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
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
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
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
에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
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
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25
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의견서
제출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
른 이행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 의료
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
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보호시설,
연고자 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장
(다만,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 등은 제외한다)에게 --
-----.

<신 설>

<신 설>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 제2항 및 제9항의 연고자 등이란 피해아동 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연고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의3(연고자 등에게 인도시 집행절차)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등과 연고자 등의 관계, 피해아동등에 대한 보호·양육 이력, 아동학대행위자와 연고자 등의 관계, 범죄 전력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사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관한 사항, 이 영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동의서 제출 및 이 영 제5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기 전 연고자 등에게 별표 1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기 전 연고자 등에게 별표 1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고자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3

<신 설>

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연고자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고자 등에게 별표1의 범죄경력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피해아동등을 그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등 필요한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연고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 등은 응급조치 기간 동안 이 영 제5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방문 및 피해아동등의 의견청취 등

7. ~ 22. (생략) <u><신설></u> <u>23.</u> 제1호부터 <u>제22호</u>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 ④ (생략)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u>와 같다.	<u>할 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u> 7. ~ 22. (현행과 같음) <u>23.</u> 제5조의3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시 집행절차에 관한 <u>사무</u> <u>24.</u> ----- -- <u>제23호</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u>별표 2</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연 락 처	(02) 450 - 4455